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활동결과보고서

---

(2025. 1. 17. ~ 2025.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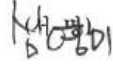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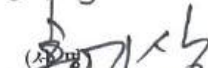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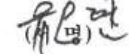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활동 결과 보고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제출)함


위원장	심영미	
부위원장	권아름	
위원	최미옥	
위원	박한근	
위원	이상길	
위원	홍기상	
위원	김혁성	
위원	원용대	
위원	유오현	


원주시의회의장 귀하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025. 1. 17. ~ 2025. 12. 19.]

	위원장
	심영미
	737-5045

	부위원장
	권아름
	737-5040

	위원
	최미옥
	737-5378

	위원
	박한근
	737-5054

	위원
	이상길
	737-5051

	위원
	홍기상
	737-5046

	위원
	김혁성
	737-5041

	위원
	원용대
	737-5055

	위원
	유오현
	737-5044



# 목 차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	3
1. 구성 목적 및 개요 .....	5
제2장 활동계획 .....	9
1. 활동계획 .....	11
2. 분야별 활동현황 .....	15
제3장 세부 활동내용 .....	17
1. 회의 개최 .....	19
2. 간담회 .....	27
3. 기타 활동 .....	31
제4장 결과보고 .....	45
1. 활동경과 .....	47
2. 성    과 .....	48
3. 향후과제 .....	51
제5장 참고자료 .....	53
1. 언론보도 .....	55
2. 조례안 .....	63



#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 ✔ 구성목적 및 개요 / 5



#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

## I 구성 목적

- 행정수요 및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 및 현실 부합성 등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II 구성 개요

###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 2. 구성일: 2025. 1. 17.(금)

-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3. 활동기간 및 회의장소

- 기간: 2025. 1. 17. ~ 2025. 12. 31.
- 장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4.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9인)
  - 위원장: 심영미 의원
  - 부위원장: 권아름 의원
  - 위원: 최미옥 의원, 박한근 의원, 이상길 의원,  
홍기상 의원, 김혁성 의원, 원용대 의원,  
유오현 의원
- 특별위원회 보좌 공무원(3인)
  -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완표, 의사팀장 정지훈, 주무관 이재민

### 5. 활동내용

- 조례의 입법취지, 목적, 적법성 여부 조사
-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점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예산편성 여부 점검 등

- 국별 조례정비안 심사
- 원주시 소관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되, 정비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시행(기관위임사무, 예산사항 등 제한 여부 검토)
-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장 활동계획



활동계획 / 11



분야별 활동현황 / 15



# 제2장 활동계획

---

## I 활동계획

### 1. 목적

- 행정수요 및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 및 현실 부합성 등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

### 3.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5. 1. 17. ~ 2025. 12. 31.
- 장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필요시 현장방문

### 4. 활동내용

- 조례의 입법취지, 목적, 적법성 여부 조사
-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점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예산편성 여부 점검 등
- 국별 조례정비안 심사
- 원주시 소관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되, 정비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시행(기관위임사무, 예산사항 등 제한 여부 검토)
-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특별위원회 구성

- 명칭: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위원: 위원장 심영미 외 8명

### 6. 특별위원회 참여부서 및 보좌 공무원

- 참여부서: 자치행정과 등 관련 업무 부서
- 보좌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사무직원 1명

## 7. 활동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2025. 3. 13.(목)	○ 제1차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025. 4. 30.(수)	○ 제2차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활동계획서 채택(일정 협의, 참고인 의견진술 및 요구자료 목록 채택 등)	
2025. 5월 ~ 2025. 10월	○ 제3차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위원회 소관별 정비대상 조례 발굴 및 연구 검토	
	○ 집행기관 의견 청취 - 관련 자료 요구 등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집행기관 간담회	
	○ 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상정	
	○ 타 지자체 벤치마킹(필요시)	
2025. 11월 ~ 12월	○ 제4차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정리	
	○ 제5차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8. 관련서류제출 요구

- 요구자료 목록안 작성 및 제출 요구  
※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 9. 참고인 출석 요구

- 자치법규 관련 업무 소관부서 과장(공무원)
- 자치법규 관련 전문가 또는 업무 관계자 등  
※ 추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 10.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2025. 11월 ~ 12월 중
- 작성내용: 일반사항(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활동결과에 대한 처리요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

## 11.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는 사전에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
- 위원회 활동에 따른 비용, 사무보조비 등은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 II 분야별 활동현황

### 1.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안 건	비고
제1차 회 의	2025. 3. 13.(목) 16:00	행정복지 위원회 회의실 (2층)	· 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차 회 의	2025. 4. 30.(수) 16:00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	
제3차 회 의	2025. 10. 28.(화) 13:30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 안건 협의의 건	
제4차 회 의	2025. 12. 8.(월) 15:00		·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2. 선진지 견학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참 석
선진지 견 학	2025. 9. 23. ~ 9. 24.	서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정보 교환 및 자료수집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 3. 간담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참 석
원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간담회	2025. 6. 24.(화) 14:00	원주시의회 모임방	·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및 원주시 조례 정비 추진 방법 논의	특별위원회 위원
원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연구회 간담회	2025. 10. 16.(목) 14:00	원주시의회 모임방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방문 및 의견 청취 ·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지 관리·운영 탐방	특별위원회 위원, 안성시의회 의원

### 4.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위원회안)

- 제 안 자: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주요내용: 원주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일괄 정비
- ※ 조례: 63페이지 참조

## 제3장 세부 활동내용



회의개최 / 19



간담회 / 27



기타활동 / 31



# 제3장 세부 활동내용

---

## I 회의 개최

### 1.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 가. 회의개요

- 일 시: 2025. 3. 13.(목) 16:00
- 장 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2층)
- 참석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9명
  - 위 원 장: 심영미 의원
  - 부위원장: 권아름 의원
  - 위 원: 최미옥 의원, 박한근 의원, 이상길 의원,  
홍기상 의원, 김혁성 의원, 원용대 의원,  
유오현 의원
- 의사일정
  - 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나. 회의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 ⇒ 심영미 위원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권아름 위원

## 다. 회의사진



## 2.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 가. 회의개요

- 일 시: 2025. 4. 30.(수) 16:00
- 장 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2층)
- 참석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6명
  - 위 원 장: 심영미 의원
  - 위 원: 최미옥 의원, 박한근 의원, 이상길 의원,  
홍기상 의원, 김혁성 의원
- 의사일정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

### 나. 회의결과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  
⇒ “협의 의결”

## 다. 회의사진



### 3.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 가. 회의개요

- 일 시: 2025. 10. 28.(화) 13:30
- 장 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2층)
- 참석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7명
  - 위 원 장: 심영미 의원
  - 위 원: 최미옥 의원, 박한근 의원, 이상길 의원,  
홍기상 의원, 김혁성 의원, 원용대 의원
- 의사일정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 안건 협의의 건

#### 나. 회의결과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 안건 협의의 건  
⇒ “협의 의결”

## 다. 회의사진



## 4.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

### 가. 회의개요

- 일 시: 2025. 12. 8.(월) 15:00
- 장 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2층)
- 참석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7명
  - 위 원 장: 심영미 의원
  - 위 원: 최미옥 의원, 박한근 의원, 홍기상 의원,  
김혁성 의원, 원용대 의원, 유오현 의원
- 의사일정
  -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나. 회의결과

-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협의 의결”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협의 의결”

## 다. 회의사진



## II 간담회

### 1.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 가. 간담회 개요

- 일 시: 2025. 6. 24.(화) 14:00
- 장 소: 원주시의회 모임방
- 내 용
  -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 원주시 조례 정비 추진 방법 논의

#### 나. 주요 협의사항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사례 파악 및 자료수집을 위해 타 지역 의회 방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송파구의의회, 남동구의의회 등 예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방문 장소는 추후 재선정하기로 함.
-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합리해진 조례의 정비 필요성을 확인. 사문화되었거나 현실적 적용이 어려운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추진 방법 논의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위원회 소관 구분 없이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연구·검토하기로 결정함.

## 다. 간담회 결과

- 원주시 조례 현황(총 657개)을 토대로 조례 정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비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함.
-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조례 정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됨.

## 라. 간담회 사진



## 2.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안성시의회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간담회 개최

### 가. 간담회 개요

- 일 시: 2025. 10. 16.(목) 14:00
- 장 소: 원주시의회 모임방
- 내 용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방문 및 의견 청취
  -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지 관리 · 운영 탐방

### 나. 간담회 결과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여, 안성시의회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조례 정비 추진 전략 수립에 실질적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함.
-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양 기관이 정비가 필요한 조례, 정비 절차, 운영사례 등 심도있게 논의하며 상호 보완 가능한 의견을 교환함.
- 원주시의회의 시설을 소개하여 의정 지원체계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이번 간담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정비 추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었음.

## 다. 간담회 사진



### III 기 타 활 동

#### 1.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선진지 견학

##### 가. 개 요

- 일 시: 2025. 9. 23.(화) ~ 9. 24.(수) [1박2일]
- 장 소: 서울특별시 일원
- 주요내용: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정보 교환 및 자료수집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의정센터 조례 정비 세미나 참석
  -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방법 및 정보 교환
  - 국회 입법박람회 참여
- 참 석: 12명(의원 7, 직원3)

##### 나. 견학내용

#### 1) 효율적인 조례 정비 방안 세미나[지방의정센터장 박순중]

- 개 요
  - 목 적: 원주시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상위법 위반 또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 정비 관련 강의를 들어 잘못된 조례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효율적인 조례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장 소: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의정센터
-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례 정비 방안, 자치법규의 역할과 위상 등 강의

○ 검토의견

- 이 세미나를 통해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조례를 파악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조례 정비 관련 강의에서는 잘못된 조례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론을 학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방향을 설정하였음.
- 강의 내용을 통해 자치법규가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였으며, 불합리한 조례 개선을 위한 사례별 접근법과 정비기준, 주민 의견 수렴 및 법적 타당성 검토의 중요성을 숙지하였음. 또한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 방안을 학습하고, 이번 강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시 조례 정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였음.

## 2)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 개 요

- 목 적: 현행 노원구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이 바뀌었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여 노원구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구 성

- 위 원 수: 7명(행정재경위원회 5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 위 원 장: 손영준 의원
- 부위원장: 어정화 의원, 차미중 의원
- 위 원: 김기범, 안복동, 오금란, 이용아 의원

- 활동기간: 2023. 2. 21. ~ 2023. 8. 20.(6개월 간)

### - 운영성과

- 2018년도 이후 미개정 조례 중 총 94건 검토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발의

### ○ 검토의견

- 원주시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와 주민

편의 증진, 행정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유사 목적을 가진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하였음.

-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구성 후 조례 정비 검토 기준을 수립하고 전체 조례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정비 대상 조례 100건을 선정하여 94건을 검토한 결과 63건을 개정·폐지·통합하기로 결정하였음. 이후 집행부 의견 조회 및 특별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정비 방향을 도출하였음.
- 이번 기관 견학과 간담회를 통해 노원구의회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와 조례 정비 절차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음. 특히 정비 대상 조례 선정부터 집행부 의견 조회, 의견 조율 및 최종 정비 방향 도출까지의 체계적인 과정과 협의 방법을 확인하였음.
- 또한 노원구의회 위원 및 직원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조례 정비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조례 정비 방향성과 운영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3) 국회 입법박람회

#### ○ 개 요

- 일 시: 2025. 9. 23.(화) ~ 9. 24.(수)
- 장 소: 국회 중앙잔디광장
- 주최/주관: 대한민국 국회
- 주 체: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 ○ 검토의견

-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석하여 기후위기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 3대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음. 박람회에서는 각 지방의회가 추진하는 우수 입법 및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 아이디어가 입법에 반영되는 소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였음. 이를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 조례 정비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하였음.
-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과 심층토론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음. 이번 경험은 조례 정비 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특별위원회의 향후 조례 정비 방향을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 견학 현장 사진



















## 제4장 결 과 보 고



활동경과 / 47



성 과 / 48



향후과제 / 51



# 제4장 결 과 보 고

---

## Ⅰ 활 동 경 과

- 본 특별위원회는 원주시의 조례가 행정환경 변화와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취지·목적·현실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불합리하거나 사문화된 조례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난 2025년 1월 17일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영미 위원장, 권아름 부위원장, 최미옥 위원, 박한근 위원, 이상길 위원, 홍기상 위원, 김혁성 위원, 원용대 위원, 유오현 위원 등 총 9명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2025년 12월 19일까지 활동하였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특별위원회 회의 4회, 선진지 견학 1회, 간담회 2회 등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음.

## II 성 과

-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원주시 소관 조례에 대하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문화되었거나 현실 적용이 곤란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정비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음. 이를 통해 조례의 입법취지·목적·상위법 부합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특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정비 방향, 정비 기준, 부서별 검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비 대상 조례 발굴을 위한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정비 대상 조례 검토 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인 조례 정비 환경을 조성하였음.
- 원주시 조례 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선진지 견학(서울특별시 일원)을 실시하여 지방의정센터 조례 정비 세미나 참여,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인 비교 연구와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론을 학습하였음. 또한 유사한 활동을 진행한 노원구의회를 방문하였음. 이를 통해 타 지자체의 조례 정비 기준, 점검 프로세스 등을 파악하여 원주시의 조례 정비 방향 설정에 실질적 참고 자료를 확보하였음.

- 간담회(총 2회)에서는 원주시의 조례 정비 추진방향, 정비 절차, 기관 간 협업 구조 등을 논의하며 관련 부서 및 타 지자체와 소통하였고, 이를 통해 정비 필요 조례의 범위, 정비 우선순위, 추진 로드맵 등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특별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소관 상임위원회별이 아닌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일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조례 체계 전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별 조례 간 상충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며, 원주시 행정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 아울러 조례 정비를 위한 체계적 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지속적인 자치법규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 생활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조례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정기적인 조례 정비를 권고하였음. 이번 활동이 원주시 조례가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향후에도 위원들은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 III 향 후 과 제

#### □ 조례 정비의 지속적 추진체계 구축

-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상위법 개정, 행정수요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정비기준 및 절차를 표준화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 마련이 요구됨.
-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구축된 정비기준을 문서화·제도화 하여 향후 조례 정비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정비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용어 및 체계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동일 개념의 상이한 표현을 통일하고,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조례 간 또는 상위법과의 중복·상충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통합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해야 함.

- 절차 규정 중 표현이 모호하거나 단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 적용 사례를 검토하여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해야 함.
  
- 아울러, 조례 체계 전반을 정기적으로 재점검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조례 구조를 구축해야 함. 이러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조례의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제5장 참 고 자 료



언론보도 / 55



조 례 안 / 63



# 언론보도

시군의회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출범...위원장에 심영미의원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입력: 2025-03-13 18:10:59 수정: 2025-03-13 18:33:27 지면: 2025-03-14(17면)

1차 회의 열고 공식 활동 개시  
현실성 갖춘 조례 정비 힘 모아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미)가 13일 시의회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원주】**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3일 시의회서 제1차 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시의회 조례정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심영미 의원을 위원장에, 권아름 의원을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최미옥, 박한근, 이상길, 홍기상, 김혁성, 원용대, 유오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의회 조례정비특위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조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권주시의리 조례장비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13일 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장에 심영미 의원을, 부위원장에 권아를 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시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을 발굴·정비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심영미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조례 정비뿐 아니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재정비에 보다 효과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입력: 2025-03-13 18:10:59 수정: 2025-03-13 18:33:27

지면: 2025-03-14(17면)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출범...“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 권해민 | © 승인 2025.03.14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미)가 출범했다.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미)가 출범했다.

특위는 최근 제25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 심영미 의원을, 부위원장에 권아름 의원을 선임하는 등 조례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특위는 최미옥, 박한근, 이상길, 홍기상, 김혁성, 원용대, 유오현 의원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보다 현실성 있는 조례 체계를 구축하

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원주시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조항들을 발굴, 정비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심영미 위원장은 “특위는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재정비해 보다 효과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위원들과 협력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선진지 견학

▲ 권혜민 | ⓒ 승인 2025.09.26 | □ 12면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미)는 23~24일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서울 노원구의회, 국회 입법박람회 등을 찾아 조례 정비와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사례를 살피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권혜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군의의회

## [포토뉴스]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위-경기 안성 시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 간담회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입력: 2025-10-16 16:09:21 수정: 2025-10-16 17:18:06 지면: 2025-10-17(11면)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심영미)와 경기 안성시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대표의원:이중섭)는 16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자치법규 정비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또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입력: 2025-10-16 16:09:21 수정: 2025-10-16 17:18:06

지면: 2025-10-17(11면)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와 간담회

송고 2025-10-16 16:09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와 간담회  
[원주시의회 제공. 재단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6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안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심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안성시의회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이종섭 대표 의원을 포함한 의원 등이 참석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원주시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과 활동 경과를 소개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주민 불편 해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조례 정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 안성시의회 연구회는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한 현안과 운영 사례를 나누며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지 관리-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영미 위원장은 "간담회는 자치법규 정비라는 공통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의회 간 교류를 통해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16 16:09 송고

---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 II 조 례 안

###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제1장 의회사무국

제1조(「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한다.

제2조(「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을 “의장을 경유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35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 제2장 경제국

제3조(「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4조(「원주시 소비자기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시의회의원”을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6조(「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의 개정)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12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1호”를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3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6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 제3장 안전교통국

제8조(「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  
1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  
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  
다.

제10조(「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호”를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시민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을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15조(「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납부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를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도로법」 제84조에”를 “「도로법」 제97조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 제76조에”를 “「도로법」 제91조에”로 한다.

제17조(「원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의 개정) 원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원주시”로,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금융자금”으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를

“보조하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를 “시비로 금융자금(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제4장 문화교육국

제18조(「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원주 옷·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의 개정) 원주 옷·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를 “「규제자

유평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0조(「원주시 옷·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원주시 옷·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을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4조(「재단법인 대한건기연맹 지원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대한건기연  
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으로 한다.

제9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로 한다.

제25조(「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스  
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18조의4”를 “법 시행령 제18조의10”으로 한  
다.

## 제5장 복지국

제26조(「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로 한다.

제27조(「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및 제25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28조(「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의 개정)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의 개정)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요보호아동의 해외”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로,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요보호아동”이란”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요보호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제3조 중 “요보호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제4조 중 “요보호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제30조(「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1조(「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2조(「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원주시 경

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를 “「여성의 경제 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로 한다.

제33조(「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로 한다.

제55조를 제54조로 한다.

## 제6장 환경국

제34조(「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로 한다.

제35조(「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의 개정)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제37조(「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기후

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9조(「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0조(「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를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제41조(「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2조(「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원주시 에너지 조례」의 개정)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원주시”를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원주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원주시 에너지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녹색건

축물 조성지원법」”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한다.

제44조(「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45조(「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시장”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제7장 도시국

제46조(「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7조(「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경리관”을 “시 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경리관”을 “시 재무관”으로 한다.

제48조(「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9조(「원주시 경관 조례」의 개정)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0조(「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영 제48조제4호”를 “영 제42조의3제4호”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1조(「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원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54조(「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시장”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원주시 시의회”를 “원주시의회”로 한다.

제28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 제8장 행정국

제55조(「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한다.

제56조(「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9조(「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개정) 원주시 주민참여예산

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시의회”를 “원주시의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 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예산연구회”를 “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연구회”를 “연구회”로 한다.

제60조(「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제9장 재정국

제61조(「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2조(「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호”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제16호 및 제8조제2항제5호”를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제63조(「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개정)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로 한다.

제64조(「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장 보건소

제65조(「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개정) 원주시 보건진료소운  
영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제11장 농업기술센터

제66조(「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시”를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장”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시에농정과장, 읍·면에는 주무주사”를 “시에농정과장, 읍·면에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타에”를 “타인에게”로 한다.

제67조(「원주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로 한다.

제68조(「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69조(「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의 개정)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70조(「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제71조(「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 보호”로 한다.

제72조(「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푸드 종합센  
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5조제3호 전단 중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로 한다.

제29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제73조(「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원주시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74조(「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5조(「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를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77조(「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등은법 제4조의2제1항”을 “등은 법 제5조”로 한다.

제78조(「원주시 농가경영기록유통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유통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8조 중 “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0조(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을 “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81조(「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 제12장 상하수도사업소

제82조(「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존 수도시설의 개조·이설·수선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漏水)가 발생

- 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斷水)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나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아니하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나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급수차 운반 또는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3항제5호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83조(「원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3장 평생교육원

제84조(「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5조(「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오손·훼손”을 “변형·훼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53조 중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